

II. 제조물책임관련 보험상품

자료제공 · LG화재 위험관리실

1. 위험유형별 보험상품분류

- 가. 배상책임위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 나. 회수위험 : 생산물회수비용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
- 다. 보증책임위험 : 생산물보증책임보험(Product Guarantee Insurance)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

가. 보험약관의 종류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약관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으며, 각 약관은 담보기준별로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약관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구분된다.

1)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국문약관은 해외 수출을 하지 않고 내수용으로만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주로 적용하는 경우의 약

관이다. 주로 손해사고기준약관으로 사용된다.

영문약관은 해외수출품 또는 외국법인이 피보험자가 될 경우에 대하여 주로 적용한다. 주로 배상청구기준약관으로 사용된다.

2) 손해사고기준약관과 배상청구기준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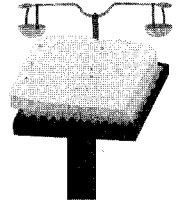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약관

보상의 대상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함. 즉, 담보대상이 되는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상함.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

보상의 대상을 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retroactive date)로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로 함.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어도 최초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보고연장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 조항을 통하여 소급일자와 보험계약 만기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는 담보함.



나. 담보의 대상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이 모두 보험가입의 대상이 되며, 담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미가공 농수산물과 축산물이 대상 범위에 포함되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 개념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류가 가능하면 일부 제품에 국한시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주로 거래 상대의 요구로 특정 제품에 한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경우로서 판단을 잘못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품에 PL사고가 발생한 경우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에서 보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가하기 위해 일정한 보험조건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금 수혜자가 된다.

완성품 제조업자와 부품, 원재료 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입업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피보험자도 가능하다. 이 경우 복수의 회사가 1개의 보험을 공유하게 되므로 보상한도액의 설정 등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보상하는 손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손해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르는 다음의 손해임.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 사망, 상해, 질병의 경우 치료비, 휴업 손실, 위자료
 - * 재물 손해의 경우에는 멸실 시의 시가, 원상회복에 요하는 수리비 등

-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 피보험자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에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 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함)
-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구상권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사전에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소송(조정, 화해, 중재 포함)을 위한 비용과 변호사 보수
- * 증권상 보상 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 보험료
- * 협력 비용(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응해 행하는 협력을 위해 지출한 비용)

마.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전쟁, 혁명, 내란 시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의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지진,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와 타인에게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함.
- *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인해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 생긴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및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상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함.
-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바. 보상한도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한다. 보상한도액은 주로 1사고 당 한도액과 보험기간 중의 총 보상한도액으로 설정한다.

- * 1사고 당 한도액 : 하나의 사고(any one occurrence / each occurrence)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체 및 재물사고를 합산한 보상한도액(대인대물일괄한도액 또는 combined single limit)으로 정한다.
- * 총 보상한도액(aggregate limit)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합계를 말하며 보험기간 중 지급한 보험금이 총 보상한도액에 도달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보험계약은 자동 실효된다.

사. 공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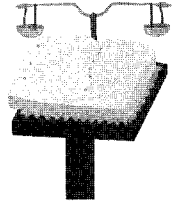
공제금액이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제금액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사고 당 최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아.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가입 생산물(제품)의 매출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text{보험료} = \text{매출액} \times \text{보험요율}$$

보험회사는 각 보험계약의 조건(생산물의 종류, 판매지역, 담보기준 (손해사고기준 또는 배상청구기준),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과거사고 사항, 보험가입경력,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게 된다.



3. 생산물회수비용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 또는 제공한 제조물의 하자 및 결함으로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어 회수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회수에 따른 각종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가. 보상하는 손해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명시된 소급담보일자리부터 보험기간동안 최초로 발견된 생산물사고(아래의 사유에 한함)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이전에 판매한 명시된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손실을 보상함.

- * 피보험자가 보증한 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여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 * 제품의 결함에 의해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산의 멸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 제품의 회수 실시, 사고의 발생 및 사고발생 우려 등의 사유가 아래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날 경우
- * 피보험자가 행정당국에 서면으로 제출한 보고서
- * 피보험자가 보험사와 사전협의하고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에 게재한 사고
- * 회수실시에 대한 행정당국의 서면지시 또는 명령

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생산물의 회수 등을 실시한 뒤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이며 동시에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아래의 비용임.

- ① 보험목적물의 회수만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사

용한 라디오, TV, 신문 및 기타 대중매체에 대한 통신비용과 운수비용

- ② 보험목적물을 회수하는데 필요하여 보험계약자가 정규직원 외에 추가 인원을 고용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회수기간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비용
- ③ 보험목적물을 회수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정규직원들이 행한 시간외 작업에 대한 수당
- ④ 보험목적물을 회수하기 위해 운송비를 포함하여 발생한 개인지출비용의 배상을 위해 위의 ②, ③에서 언급한 인원들에게 지급한 추가비용
- ⑤ 생산물사고에 의해 야기된 보험목적물의 물리적 검사 혹은 파괴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필요비용. 단, 보험목적물의 대체비용은 제외함.

4. 생산물보증책임보험(Product Guarantee Liability Insurance)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 또는 제공한 제조물의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한 제품자체의 수리 및 교체비용 등 손실을 보상하며, 선택담보로 제품의 수리기간중의 사용손실도 담보가능.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분배하는 생산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품질결함으로 인하여 생산물을 수리,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 제품의 이윤을 뺀 원가를 비교하여 둘 중 적은 금액을 보상함.

최근에는 생산물보증책임보험이 생산물연장보증제도(Extended Warranty)의 개념으로 도입되어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 마케팅의 차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판매와 MS 제고 및 회사에 대한 소비자 Loyalty 제고를 통한 장기적인 마케팅 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